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
(고시) 전부개정안

2023. 5. 23.

국 토 교 통 부

(항공기술과)

1. 개정이유

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,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국제표준화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을 고시에 맞게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」으로 제명을 변경
- 나. 국제기준 관리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부령 및 타 행정규칙에 산재된 등록 관련 기준을 동 고시로 옮기고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재편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동 고시의 별표 2·3에서 규정한 경량항공기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크기를 본문의 항공기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높이 편으로 병합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ICAO 부속서 7 제2.1조의 항공기 구분표(Table 1)를 신설(안 제2조, 별표 1)
- 마. 재검토기한 연장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 제18조, 제12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제5항 및 「항공기등록규칙」 제7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전부개정고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개정고시안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”을 “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”으로 한다.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항공안전법」 제18조, 제12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「항공기등록규칙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항공기의 구분) 항공기를 등록할 때의 항공기(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) ①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,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(-)를 삽입한다.

② 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)이 할당한 “HL”로 표시한다.

③ 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,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. 다만, 긴급 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.

1. 국제코드(International Code of Signals, Part II)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
2.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
3. 조난신호 SOS, XXX,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

제4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 위치)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부호의 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·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가.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: 대칭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

나.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: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

다.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: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

2. 비행기, 활공기,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가.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: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,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. 다만,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.

나.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: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,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. 다만,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는 제외한다.

다.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: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. 다만,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 착륙장치 옆면에 표시한다.

3. 헬리콥터,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)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: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

2)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: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

4. 동력패러슈트의 경우에는 캐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중앙부에 표시할 것

제5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이)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,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수평안정판·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

2. 비행기, 활공기,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

3. 헬리콥터,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

제6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) ①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는 로마자로 된 대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어야 하며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②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,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폭과 붙임표(-)의 길이: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. 다만,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.
2. 선의 굵기: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
3. 간격: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

제7조(등록증명서의 양식)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, 등록기호,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「항공기등록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.

제8조(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)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(耐火金屬)으로 된 등록기호표(가로 7센티미터,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)에 국적기호,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.

1.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: 항공기 주(主)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
2. 항공기에 출입구 또는 객실이 없는 경우: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

제9조(등록기호의 지정 신청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수입하거나 제작한 항공기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
2.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

항공기로서 항공기 식별부호를 지정받기 위해 등록기호를 지정받고
자 하는 자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·제작사·제작일련번호·도입예정월을 기재하고 항공기 등의 도입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기호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등록기호를 등록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. 다만,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등록기호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말소된 등록기호는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항공기에 재지정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1조(등록기호의 지정 효력)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의 지정은 「항공안전법」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「항공안전법」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②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

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3.xx.x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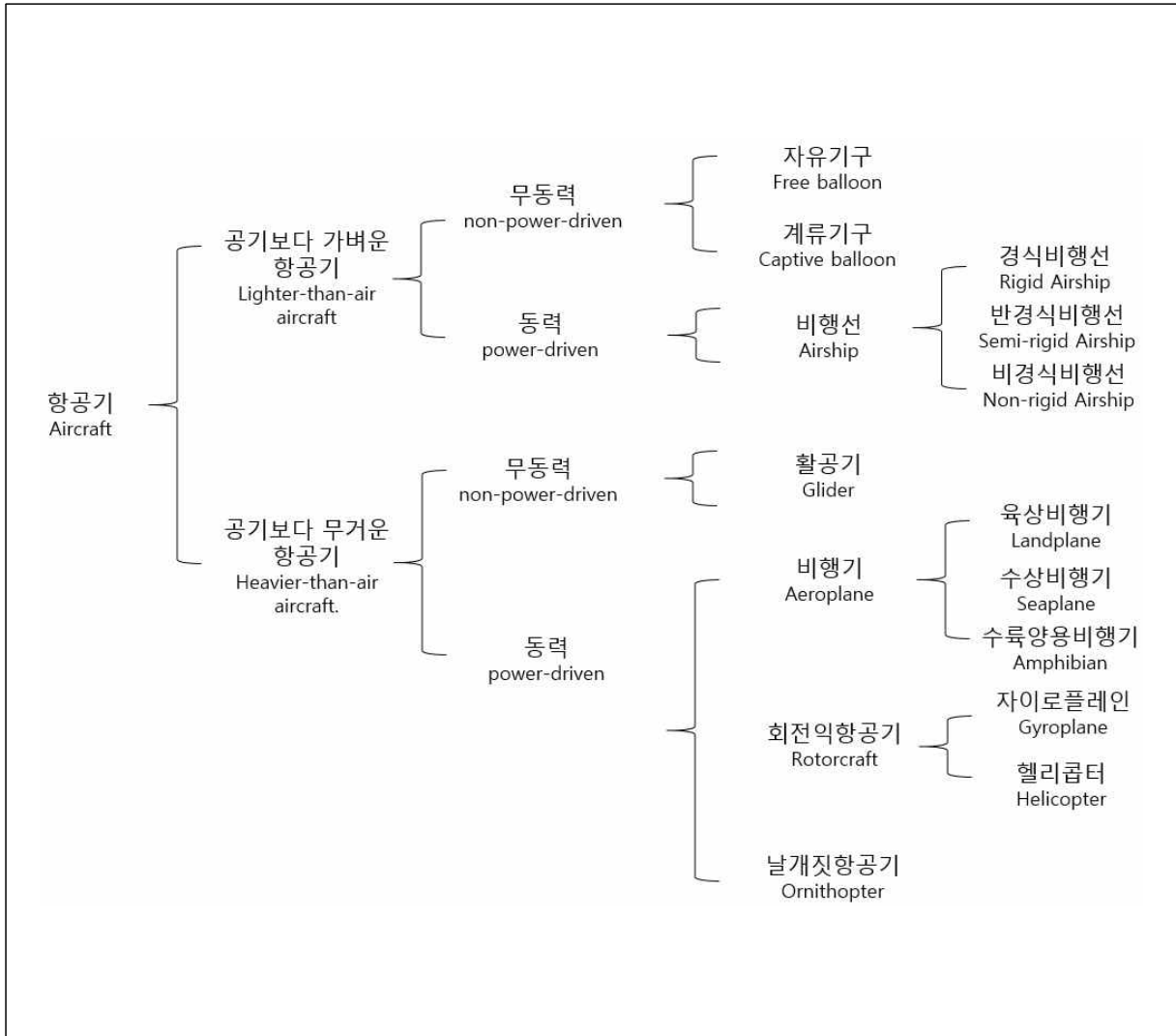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에 따라 행한 등록과 이에 관련되는 처분은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항공기의 구분

(Classification of Aircraft)



비고(Remark):

1. 위 표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(항공기등록)의 기준에 따른다.
2.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.
3. 무인항공기에는 무인자유기구(Unmanned free balloon)와 원격조종항공기(Remote piloted aircraft)가 포함된다.

[별표 2]

항공기 등록기호

(Aircraft Registration Marks)

구분	발동기 종류 및 장착 수량		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
비행기 Aeroplane	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	단발기	1000~1799
		다발기	2000~2799
	터보프롭 발동기 Turbo-Prop Engine	단발기	5100~5199
		쌍발기	5200~5299
		삼발기	5300~5399
		사발기	5400~5499
	터보제트발동기 Turbo-jet Engine	단발기	7100~7199
			7200~7299
			7500~7599
			7700~7799
			8000~8099
			8200~8299
			8300~8399
			8500~8599
8700~8799			
삼발기		7300~7399	
사발기	7400~7499		
		7600~7699	
		8400~8499	
		8600~8699	
회전익항공기 Rotorcraft	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	단발기	6100~6199
		쌍발기	6200~6299
	터보 발동기 Turbo Engine	단발기	9100~9199
			9300~9399
			9500~9599
		다발기	9200~9299
		9400~9499	
		9600~9699	
활공기 Glider	-		0000~0599
비행선 Airship	-		0600~0799
경량항공기 Light Sports Aircraft	-		C001~C799
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	-		001U~999U
임시지정	국내 생산		001S~999S
	실험 및 연구 목적		001X~999X
	그 밖의 경우		001Y~999Y

비고(Remark) : 사용하지 않은 등록기호는 항공기 등록대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<u>항공안전법 시행규칙</u>」 제13조제5항에 따라 <u>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등록기호의 구성) ① <u>등록기호는 항공기 종류, 발동기 장착수량의 구분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등록기호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(이하 “항공기 등”이라 한다)의 종류에 따라 [별표 1]과 같이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(-)를 삽입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항공안전법</u>」 제18조, 제12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「<u>항공기등록규칙</u>」 제7조 제2항의 <u>규정</u>--- 및 --- 등에 -----.</p> <p>제2조(항공기의 구분) <u>항공기 등록할 때의 항공기(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제3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) ① 「<u>항공안전법 시행규</u></p>

칙」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,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(-)를 삽입한다.

② 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)이 할당한 “HL”로 표시한다.

③ 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,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. 다만, 긴급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.

1. 국제코드(International Code of Signals, Part II)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
2.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
3. 조난신호 SOS, XXX,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

<신 설>

제4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 위치)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부호의 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·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가.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: 대칭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

나.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: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

다.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

경우: 수직안정판의 양 쪽
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
표시할 것

2. 비행기, 활공기, 타면조종형
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
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
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
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
한다.

가.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:

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
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
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
리에 위치하도록 하고, 등
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
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
할 것. 다만, 각 기호는 보
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
는 아니 된다.

나.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

우: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
면에, 꼬리 날개의 앞 끝과
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
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
직으로 표시할 것. 다만,
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

형 비행기의 경우는 제외한다.

다.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: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. 다만,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 착륙장치 옆면에 표시한다.

3. 헬리콥터,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)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: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

2)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: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

<신 설>

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

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

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

4. 동력패러슈트의 경우에는 캐

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

중앙부에 표시할 것

제5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

이)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

제15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

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

같아야 하고, 항공기의 종류와

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

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

가.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

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수평안정판·수직안정판

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

센티미터 이상

2. 비행기, 활공기, 타면조종형

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에 표시

하는 경우

가.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

에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

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
센티미터 이상

3. 헬리콥터, 경량헬리콥터 및
자이로플레인에 표시하는 경
우

가.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
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

나.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
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

제3조(등록기호의 지정 신청) 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(항공
기술과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에게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할
수 있다.

1. (생략)
2.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
따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
니하는 항공기로서 항공기 식
별부호를 지정받기 위해 등록
기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

② (생략)

제4조(등록기호 지정) ① 국토교

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등록기
호를 등록 순서에 따라 지정한
다. 다만,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

제9조(등록기호의 지정 신청) ①

----- 국토교통부장관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4
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
등록기호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말소된 등록기호는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항공기에 재지정하지 않아야 한다.

제5조(등록기호의 지정 효력) ① 등록기호의 지정은 항공안전법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(경량항공기 등록부호의 표시방법 등) ①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는 [별표 2]와 같이 정한다.
② 등록부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[별표 3]과 같이 정한다.

제11조(등록기호의 지정 효력)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-----
----- 「항공안전법」 제8조----- 「항공안전법」 제9조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) ①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는 로마자로 된 대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어야 하며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②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,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폭과 붙임표(-)의 길이: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. 다만,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.

2. 선의 굵기: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

3. 간격: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

제7조(등록증명서의 양식)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, 등록기호,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「항공기등록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.

제8조(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)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(耐火金屬)으로 된 등록기호표(가로 7센티미터,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)에 국적기호,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.

1.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

<p><u>제7조(재검토기한)</u>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8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<u>우: 항공기 주(主) 출입구 및 부분의 안쪽</u></p> <p><u>2. 항공기에 출입구 또는 객실이 없는 경우: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</u></p> <p><u>제12조(재검토기한)</u>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---	---